

한국체육대학교 겸임교원 규정

폐지 2019. 7. 22. 규정 제794호

1. 폐지 사유

- 「고등교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(강사 및 겸임교원 등 관련)이 2019.8.1.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겸임교원 등에 관한 규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통합하여 새로운 규정으로 제정

2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없음
- 라. 기 타 :